

의안번호	제 77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6월 30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1
----------	-----

제출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용어 정의에 대한 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변경(안 제2조제9호)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는 다음과 같다.</p> <p>1. ~ 8. (생 략)</p> <p>9. "긴급자동차"라 함은 「<u>도로교통법</u>」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도로교통법</u>」 제2조제22호----- ----- -----</p>

관계 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의2 생략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 33. 생략

□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라 함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 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 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 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7. "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